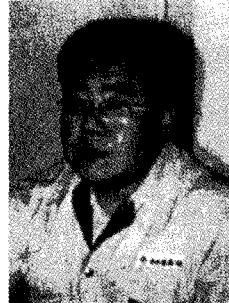


PL법 관련 목재파렛트업계 대처방안

업계·협회·사용자 간
공동대책 마련해야.



(주)진성산업
이사 홍진기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파렛트에 대한 PL법 대처 방안이 전무해 목재파렛트 제작업체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우려와 대책 모색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당장 시급한 목재파렛트 PL관련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PL관련 목재파렛트 납품계약서의 약관 제정이다. 이 계약서는 파렛트 제작처와 사용자 그리고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합의점을 찾아 약관을 제정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를 위한 사용설명서를 업계 공동으로 제정해 납품업자와 사용자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파렛트 제작처 표시제를 실시해 파렛트의 유통상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과 목재 사용종류(활엽수, 침엽수)표기, 제작시기 표기, 파렛트 사용구분(내수 일회용, 수출 일회용, 적재용)의 표기 등으로 파렛트 제작 및 유통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파렛트의 품질 기준을 향상시켜 사용상 불편과 파렛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불량품 생산의 발생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방안으로는 제작처와 협회가 협의해 목재파렛트 출하, 수입검사 표준을 제정해야 하겠다. 이는 파렛트 품질표준을 높이고 품질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

PL법은 앞으로 목재파렛트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체의 큰 숙제가 될 것이며 각 업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공동 대처는 각 제조업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보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으로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어려운 국내 제조업의 활로가 되는 PL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